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9,228,458	13,176,854
일반회계	428,598,536	12,857,956
특별회계	10,629,922	318,898
기타특별회계	10,629,922	318,89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06,003	84,180
주택사업특별회계	503,058	15,092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97,183	11,915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3,386,055	101,58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54,700	82,641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특별회계	452,923	13,588
석탄회지역발전기금사업특별회계	230,000	6,9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641,603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 동일 부문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기구·직제 개편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부서간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사업예산구조화를 통하여 예산을 상호 이체한다.